

심 사 보 고 서

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「소송비용(채권) 면제」
동의안

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「소송비용(채권) 면제」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00
----------	-----

2024. 6. 24.(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6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6월 11일

-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소방본부장)

가. 제안이유

- '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(이하 당사자들)는 '20년 道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'23년 3월 소송이 종결되었음.

- 패소에 따른 당사자들의 소송비용은 ‘24년 1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고, 같은 해 2월 소방본부는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음.
- 당사자들은 ‘24년 3월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「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서」를 제출하였으나 내용보완을 이유로 철회하였고, 같은 해 4월 수정 제출하였음.
- ‘24년 4월 김꽃임 의원의 소개로 충청북도의회에 청원이 상정되고 건설환경 소방위원회 의결을 거쳐, 충청북도지사가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.
- 충청북도지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, 당사자들은 비록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자이며,
 - 정부·국회·지방자치단체·지방의회 등 각계는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이 변함없는 바,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건 소송비용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청원을 “수용” 하는 의견임.
- 그러나 해당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한 면제가 핵심내용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을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.
- 또한 “청원에 대한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.”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, 채무면제에 대한 별도의 의결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면제될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86조에 근거해 채권이 종국적으로 면제될 수 있도록 「소송비용(채권) 면제 동의안」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면제대상 :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
 - ※ 사건번호 :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카합 1045(유가족), 1046(부상자)
- 소송비용 세부내역(총 204명, 금176,814,484원)
 - 유가족 소송비용(202명, 총 금139,230,973원) / ‘24. 1. 25. 확정
 - 2심 선정당사자 민○○ 부담금액 : 금88,507,851원
 - 3심 선정당사자 김○○와 선정당사자들(201명) 부담금액 : 각자 금251,104원
- 부상자 소송비용(2명, 총 금37,583,511원) / ‘23. 8. 21. 확정
 - 선정당사자 한○○ 부담금액 : 금34,100,546원
 - 선정자 이○○ 부담금액 : 금3,482,965원
- 관련사건
 - 1심 :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0070(유가족), 2020가합10100(부상자)
 - 2심 : 대전고등법원 2021나51984(유가족), 2021나51892(부상자)
 - 3심 : 대법원 2022다297373(유가족), 2022다297366(부상자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본 동의안은 ‘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2020년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2023년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을 면제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됨.
- 도의회에서는 제416회 임시회를 통해 ‘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’을 의결하였고, 충북도는 소송비용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원에 관한 조치 결과로써 본 동의안을 제출함.

-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함.
- 「민사소송법」 제98조(소송비용부담의 원칙)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론적 원칙이지만 본 건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자라는 인식하에 접근해야 함.
- 충북도가 소송에서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에 착안하여 손해배상 측면에서는 충분한 법적지위를 확보하였으므로, 보상적 측면의 소송비용면제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4. 검토의견

-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「소송비용(채권) 면제」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,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의결한 청원의 처리결과로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유가족 및 부상자에게 청구된 소송비용 면제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「소송비용(채권) 면제」 동의안 등

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「소송비용(채권) 면제」 동의안

의안 번호	60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'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(이하 당사자들)는 '20년 道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'23년 3월 소송이 종결되었음.
- 패소에 따른 당사자들의 소송비용은 '24년 1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고, 같은 해 2월 소방본부는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음.
- 당사자들은 '24년 3월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「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서」를 제출하였으나 내용보완을 이유로 철회하였고, 같은 해 4월 수정 제출하였음.
- '24년 4월 김꽃임 의원의 소개로 충청북도의회에 청원이 상정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결을 거쳐, 충청북도지사가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.
- 충청북도지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, 당사자들은 비록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자이며,

- 정부·국회·지방자치단체·지방의회 등 각계는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이 변함없는 바,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건 소송비용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청원을 “수용” 하는 의견임.
- 그러나 해당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한 면제가 핵심내용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을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.
- 또한 “청원에 대한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.” 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, 채무면제에 대한 별도의 의결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면제될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86조에 근거해 채권이 종국적으로 면제될 수 있도록 「소송비용(채권) 면제 동의안」 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면제대상 :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

※ 사건번호 :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카합 1045(유가족), 1046(부상자)

- 소송비용 세부내역(총 204명, 금176,814,484원)

① 유가족 소송비용(202명, 총 금139,230,973원) / ‘24. 1. 25. 확정

- 2심 선정당사자 민○○ 부담금액 : 금88,507,851원

- 3심 선정당사자 김○○와 선정당사자들(201명) 부담금액 : 각자 금251,104원

② 부상자 소송비용(2명, 총 금37,583,511원) / '23. 8. 21. 확정

- 선정당사자 한○○ 부담금액 : 금34,100,546원

- 선정자 이○○ 부담금액 : 금3,482,965원

○ 관련사건

- 1심 :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0070(유가족), 2020가합10100(부상자)

- 2심 : 대전고등법원 2021나51984(유가족), 2021나51892(부상자)

- 3심 : 대법원 2022다297373(유가족), 2022다297366(부상자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88조, 제13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86조,
「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」 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